

스포츠경영 · 산학연구소 규정

제정 2007. 03. 01 개정 2013. 02. 28
개정 2014. 03. 31

제1조 (목적) 이 연구소는 스포츠 및 레저마케팅 전공의 전문능력을 결집하여 대학의 특성화, 교육의 전문화, 연구 활성화 환경조성에 기여하여 우리 대학의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하며,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(Sports Tourism) 도시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하며,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극대화 차원에서 지역 스포츠 및 레저관련업체의 기술수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영동지역이 스포츠 및 레저 분야의 메카로 발전하는데 요구되는 환경조성에 지도적인 역할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내에 “스포츠경영 · 산학연구소”(Institute of Sports Management / Industrial & Educational Research)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.)를 둔다. (개정 2014. 03. 31)

제3조 (연구원) ①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의 스포츠마케팅학과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. 단,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및 타 대학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03. 31)

②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교수로 임용되고, 수행하는 연구과제 종료시 임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.

제4조 (사업)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최신 스포츠 산업 및 경영 분야에 긴요한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분석, 기획 및 연구와 이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. (개정 2014. 03. 31)
2. 위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, 훈련 및 양성
3.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연구 활동을 수행
4. 스포츠 산업 및 경영 발전에 관한 홍보, 도서 간행 및 관계 문헌의 수집을 수행하며, 연구업적에 대한 종합 학술지를 발간. (개정 2014. 03. 31)
5. 기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 (소장) ① 소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
제6조 (연구실)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실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.

제7조 (행정지원실장)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지원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촉 연구 교수 및 위촉 연구원) ① 위촉 연구교수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현장 경력 5년 이상자로 특정 연구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에 따라 연구조교수, 연구부교수, 연구교수로 구분하되, 소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4. 03. 31)

② 위촉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9조 (사무원)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은 사무원을 임명, 해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운영 위원회)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11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, 소장이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.

②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2조 (위원회의) ① 위원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심의 사항) 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2.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
3.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
4. 연구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
5.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
6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 (재정)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
2. 창조금과 기타 보조금
3. 본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

제15조 (연구비 및 관리비)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.

제16조 (예산, 결산)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